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70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6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김영환의원안, 정부안)	4

I. 개요

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김영환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환급(제20조의3) ☐ 공제·환급 사유(제3항) -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제1호) -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u>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제2호)</u> -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제3호)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제4호)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u>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

* 김영환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7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2)

☐ 「지방세법」 제55조¹⁾에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

1)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²⁾에서는 해당 신고와 함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품질불량·판매부진 등에 따른 폐기 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를 다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으로 반입한 후 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폐기장소로 이동시켜야 함.³⁾

□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통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건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폐기하려면 폐기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 담배를 굳이 다시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기 여부의 확인·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또한, 폐기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였다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참고로, 「지방세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품질불량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폐기 장소로 이동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담배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사유]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지방세법(제63조)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 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1. (좌 동)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 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u>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u>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지방세법(제63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좌 동)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으로는 담배소비세와 달리,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받기 위해 여전히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폐기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담배에 대해 세목별로 상이한 절차를 적용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또한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폐기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